

'95 축산발전기금 운용계획지침

농림수산부는 지난 6월 25일 내년도 축산사업 추진을 위한 축산발전기금 운용계획 지침을 마련,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에 시달했다.

축산업구조개선, 품질고급화 및 시장차별화, 수급 및 가격안정정책 유통시설 확충 등의 사업에 중점 지원될 '95 축산발전기금은 “농가자율사업”, “단체사업”, “중앙사업”으로 구분 지원된다.

“농가자율사업”은 농가 또는 협업조직 등이 종합사업계획서를 작성,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은 축종별협의회에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한 후 농발심의회를 거쳐 도에 제출하고 도는 도 농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「시군 농어촌발전계획」상의 '95년도 금액범위안에서 조정된 후 '94년 8월 31일까지 농림수산부에 제출하여 검토후 지원받게 된다.

농림수산부의 '95 축산발전기금 운용계획 지침 시달내용을 요약·소개한다.

..... <편집자 주>

1. 재원조달

- 수입쇠고기 판매수익금
- 대출금에 대한 이자수익금
- 한국마사회 경마수입금중 일부

2. 정책목표

- 경쟁력있는 산업육성
-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정가 공급
- 쾌적한 축산환경 유지

3. 사업주체에 따른 구분

구분	내용
농가자율사업	정부가 제시한 조건내에서 농가 또는 그 협업조직 등이 사업내용을 선택, 축종별협의회에서 대상자 선정
단체사업	지방자치단체 또는 축협 등 축산관련단체가 사전에 중앙과 협의를 거쳐 직접 또는 주도적으로 추진
중앙사업	전국통일 또는 도간 균형유지상 정부주도 추진

* 축종별협의회 구성(7명)

- 위원: 시·군 축산과장(의장), 농촌지도소 축산계장, 축산농가 대표(4), 축협 전무(원칙적으로 업종조합)
- 간사: 시·군 축산계장

4. 지원 한도액

구분	적용
개인	2억원 이내, 기타가축은 5천만원 이내
축협등공공단체	자기자본의 400% 이내
민간단체	자기자본의 200% 이내

5. 예산 요구 절차

구분	내용
농가자율사업	시·군에 신청하면, 농림수산부 주관부서
단체사업	와 협의후 축협중앙회 기금관리부에 신청
경쟁력향상사업	농가 또는 협업조직 등은 지원기준(별표 1)에 따라 사업내용을 선택, 종합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·군에 제출

<돼지>

축종별 경쟁력사업 지원기준

구분	세부사업내용	지원비율(%)			
		기금보조	기금융자	지방비	자담
기반시설	○ 용수개발, 부지정지 등	-	70	-	30
사육시설	○ 축사신축, 증개축 ○ 급이·급수시설 ○ 자동환기, 열풍기 등 ○ 축사내부 각종 시설 ○ 양돈관리용 기계·기구	-	70	-	30
기타시설	○ 기타 필요한 시설	-	70	-	30

축산단지조성 지원기준

세부사업내용	지원비율(%)					지원기준
	국비보조	국비융자	지방비	자담	계	
○ 기반조성시설	70 (50)	- (20)	20	10	100	○ 사육장 10ha당 소는 0.5km, 돼지·닭은 1km 지원, km당 1억원을 선별적으로 지원(노퍽 4m, 포장 3m) * 사육장: 초지 및 사료포, 목도, 축사부지 등 가축사육에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토지 10ha당 한우 암소 100, 수소 300두, 젖소 40두 이상 사육, 돼지 1만 5천두, 닭 15만수 ○ 사육장 10ha당 0.5km 지원 - km당 4천5백만원(노퍽 4m, 한우, 젖소) ○ 1개공당 3천만원 - 사육장 10ha당 1공(한우, 젖소, 돼지, 닭) ○ km당 550만원 - 사육장 10ha당 0.5km 지원(한우, 젖소, 돼지, 닭)
- 목도개설						
- 용수개발						
- 전력						
○ 사육장시설						
○ 조사료생산시설						
○ 조사료장비 등						
○ 기타						
("해당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" 지원기준과 동일)						

'95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기준

1. 사업별 지원조건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개 소 당 사 업 비	지 원 비 율(%)			재 원
			용 자	보 조	자 담	
개 별 시 설	간이정화시설	4.2	50	50	-	농 특 회 계
	정화시설	10	50	50	-	
	비료화시설①	100	70	-	30	
	비료화시설②	50	70	-	30	
	퇴비처리장비	10	100	-	-	
공 동 시 설	축분발효시설	1,000	40	50	10	농 특 회 계
	분뇨운반장비	30	20	50	30	
	톱밥제조시설	300	-	100	-	
	분뇨공동저장탱크	50	40	50	10	
	정착촌구조개선	300	-	100	-	

2. 지원대상 및 내역

구 분	지 원 대 상	지 원 내 역
간이정화시설 정화시설	신고대상 미만중 소 11~30, 돼지 51~200두 사육농가 신고대상('94. 6월말 기준)	간이정화조, 퇴비사, 건조장 정화조, 퇴비사, 건조장, 톱밥발효축사, 저장액비탱크 (개보수시설 포함)
비료화시설① 비료화시설②	허가대상(닭은 신고대상 포함) 신고대상	교반식·통풍식·건조식 발효시설 〃
퇴비처리장비	신고대상 이상	스키드로다, 톱밥제조기, 건조기, 고액분리기
축분발효시설	축산단체(축산단지, 영농조합, 협업체 등)	부산물비료 제조업 시설
분뇨운반장비	〃	바람카, 살포차량(콤비탱크)
분뇨공동저장탱크	〃	분뇨공동저장탱크시설비
톱밥제조시설	임협(목재집하장)	톱밥제조기 및 제조시설
정착촌구조개선	나정착촌	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

※ 1)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에 불구하고 소요액 신청(국비예산이 확정되는대로 도별로 배분할 계획임).

2) 사육규모 확대에 따른 시설 개보수능가 추가지원 허용. 단, 정화시설은 무허가축사 제외.